

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

가구규모	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기준중위소득	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
생계급여	30%	512,102	871,958	1,128,010	1,384,061
의료급여	40%	682,803	1,162,611	1,504,013	1,845,414
주거급여	44%	751,084	1,278,872	1,654,414	2,029,956
교육급여, 차상위(장애,자활, 본인부담경감)	50%	853,504	1,453,264	1,880,016	2,306,768
한부모가족 (복지급여지급대상)	52%	1,511,395	1,955,217	2,399,039	2,842,861
한부모가족 (증명서발급대상)	60%	1,743,917	2,256,019	2,768,122	3,280,224
초중고학생교육비	60%	-	2,256,019	2,768,122	3,280,224
서울형기초보장제도 (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3%)	소득	734,013	1,249,807	1,616,814	1,983,820
	재산	· 가구당 재산액: 총 135백만원 이하 (일반재산+자동차+금융재산-부채) ·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적합			
기초연금		1,370,000	2,192,000	-	-
장애인연금		1,220,000	1,952,000	-	-

■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(2019년) : 기준중위소득 43% => 44%

■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복지급여

● 생계, 의료급여 (2019년)

- 부양의무자가구 - 장애인연금수급 중증장애인
- 부양의무자가구 - 기초연금수급 노인 [※생계급여만 해당]
- 신청가구 - 30세미만 한부모가구, 30세미만 시설 퇴소(보호종료)아동

● 주거, 교육급여

● 한부모가족, 차상위(장애,자활), 초중고학생교육비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